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정밀검사시:7일)						
신청인	업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검사대상 수산물	품명	개수	중량	포장의 종류	1개의 내용량	생산자	생산지	목적지	가격
검사(생략)받으려는 항목				검사 희망일 (장소)	발급 받으려는 증명서 종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제1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1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일지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1부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